

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

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평정대상 공무원에게는 종합평정 등급 및 점수, 종합평정 의견과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.

제24조제4항제2호 중 “영 제32조제2항제5호”를 “영 제32조제2항제5호 및 연구·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영 제32조제2항제5호의2 및 연구·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민원 업무 중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근무경력 가산점 평정의 적용 시점에 관한 특례) ① 제24조제2항제2호

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산점을 평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제25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하거나 변경한 가산점 부여기준은 그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한 내용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) ①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 다만,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.	제11조(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평정대상 공무원에게는 종합평정 등급 및 점수, 종합평정 의견과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.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24조(근무경력 가산점) ① (생략)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. 1. (생략) 2.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<신설>	제24조(근무경력 가산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. 1. (현행과 같음) 2. 영 제32조제2항제5호 및 연 구·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 제6호----- 3. 영 제32조제2항제5호의2 및

③ ~ ⑤ (생략)	<u>연구·지도직규정 제14조제2</u> <u>항제6호의2에 따라 민원 업무</u> <u>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</u> <u>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</u> <u>업무에 근무한 경력</u>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	--